

를 설치하였으며, 향후 동 심의회를 통해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.

지난 '07.5.30일 제1차 지방비부담심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운영방안 및 사회복지 관련 지방재정부담 완화방안 등 주요 재정현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,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·재정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서 앞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대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## 2. 장기적 대응전략 - 사회복지서비스 재원분담관계의 재정립

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(지방세+세외수입+지방채), 중앙정부로터의 이전재원(교부세+국고보조금), 그리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본인 부담분 등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.

1) 자체재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재정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사용되는 목적세 형식의 조세체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. 그러나 중·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 세원을 발굴하는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.

지방채(혹은, 국채)를 발행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(혹은, 가능한가)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<sup>8)</sup>에서는 현재세

7)

< 지방비부담심의회 위원 (총8명) 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2 - 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장 : 행정자치부 제2차관 (당연직)</li> <li>○ 위 원 :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(당연직),                   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부단체장 2인,                   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부단체장 2인,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재정관련 민간 전문가 2인</li> </ul>

8)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사회적 투자(social investment)와 사회적 소비(social investment)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, 인적자본·사회적 임금·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“사회적 투자”로 설정하고 빈곤과 질병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의 의무적 지출은 “사회적 소비”로 분류할 수 있다. 전자는 주로 사회적 생산역량 증가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며, 후자는 총수요 증대에는 기여하지만 사회적 생산역량 증대효과는 높지 않은 지출 부분이다.(O'connor(1973), 이재원(2007), p.8에서 재인용) 여기서 전통적 시